

문서번호	감사실-5318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6.09.23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231호

★대리	팀장	감사실장	상임감사	이사장
협 조				

- 市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대책 관련 -  
**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**

2016.

#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

퇴직 후 부당한 목적의 재취업 제한과 퇴직자 취업 업체에 대한 특혜방지 구체화 및 정보공개 업무처리 자세 조항 신설

※ 기획조정실 심의 및 사규개정예고('16.9.7~9.18) 완료

## 1 추진방향 및 경과

○ 「서울시 공기업담당관 행동강령 표준안」 준용

- 관련근거 : 市 공기업담당관-8619(2016.7.28.)호

『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알림』

▶ 표준안에 대한 법적 적정성 및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시행 (市 공기업담당관)

○ 반부패 자율협력 기관(인천환경공단) 부패영향평가 의견반영

- 관련근거 : 감사실-5179호(2016.9.19)호

『제2회 반부패 자율협력 회의 결과보고』

## 2 개정(안) 주요내용

○ 부당한 목적의 재취업 제한 (제6조의4 신설)

현행
· 퇴직 후 취업제한 관련 별도 조항 없음



개정
· 퇴직 후 특혜를 받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의 취업 제한 신설

제6조의4(퇴직 후 취업 제한) ① 임직원은 공단 퇴직 후 취업시 「공직자윤리법」 등 관련법령과 이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은 퇴직 후 공단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공단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○ 퇴직자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구체화 (제7조의2 신설)

현행 (제7조)	개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혜의 배제</li> <li>- 지연·혈연·학연·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및 차별 금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공단 퇴직자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명문화</li> </ul>

**제7조의 2(퇴직자 관련 특혜의 배제)**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단 퇴직자 (이하 '퇴직자'라 한다)에게 직무상 어떠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.  
 ② 임직원은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, 대가 과다지급 등 계약상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.  
 ③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
○ 정보공개 업무처리 자세 명문화 (제11조 제②항 신설)

현행 (제11조)	개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투명한 회계 관리</li> <li>-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회계 원칙 등에 근거한 투명한 회계관리 규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정보공개</li> <li>-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투명한 회계 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처리 자세 명문화</li> </ul>

**제11조(투명한 회계 관리 및 정보공개)** ①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.  
 ②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경영정보 공시 요구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
**3 | 향후 추진일정**

- 방침수립 : ~`16.9.23
- 공포의뢰(→기획조정실) : ~`16.9.26
- 공포·시행 : ~`16.9.30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&lt; 신 설 &gt;</p>	<p>제6조의4(퇴직 후 취업 제한)</p> <p>① 임직원은 공단 퇴직 후 취업시 「공직자 윤리법」 등 관련법령과 이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임직원은 퇴직 후 공단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공단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부당한 목적의 재취업 제한</p>
<p>&lt; 신 설 &gt;</p>	<p>제7조의2(퇴직자 관련 특혜의 배제)</p> <p>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단 퇴직자(이하 '퇴직자'라 한다)에게 직무 상 어떠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임직원은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, 대가 과다지급 등 계약상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 행동강령 및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.</p>	<p>퇴직자 관련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 구체화</p>
<p>제11조(투명한 회계 관리)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&lt; 조문 제목 개정 &gt;</p> <p>제11조(투명한 회계관리 및 정보공개)</p> <p>①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경영정보 공시 요구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</p>	<p>정보공개 업무수행 자세 명문화</p>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(안) 1부. 끝.